

사 업 연 도	· · · ~ · · ·	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(갑)	법인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손익 조정금액

①구 분	②당기손익금 해 당 액	③회사손익금 계 상 액	조 정		⑥손익 조정금액 (②-③))
			④차익조정 (③-②)	⑤차손조정 (②-③)	
가. 화폐성 외화자산 · 부채 평 가 손 익					
나. 통화선도 · 통화스왑 · 환변동 보험 평가손익					
다. 환 율 조 정 계 정 손 익	차익				
	차손				
계					

2. 환율조정계정 손익계산 명세

⑦구 분	⑧최종 상환(회수)기일	⑨전기 이월액	⑩ 당기경과일수 잔존일수	⑪손익금 해당액 (⑨×⑩)	⑫차기 이월액 (⑨-⑪)	비 고
계	차 익					
	차 손					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의 작성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1) 화폐성 외화자산·부채 및 통화선도·통화스왑·환변동보험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("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)
 - 2) 화폐성 외화자산·부채 및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·통화스왑·환변동보험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("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) 외의 법인으로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6조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선택한 법인
 - 3) 1998.12.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장기성 외화자산·부채에 대한 평가차손익을 환율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는 법인
- ※ 위 1)·2)·3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손익은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"소득금액조정합계표(별지 제15호서식)" 및 "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(별지 제15호서식 부표1·2)"에 적습니다.
2. "가.화폐성 외화자산·부채 등 평가손익"과 "나.통화선도·통화스왑·환변동보험 평가손익"의 ②당기손익해당액란은 "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40호서식(을)]"의 ⑩란 평가손익을 적습니다.
 3. "가.화폐성 외화자산·부채 등 평가손익"과 "나.통화선도·통화스왑·환변동보험 평가손익"의 ③회사손익금계상액은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결산 시 외화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을 적습니다.
 4. "가.화폐성 외화자산·부채 등 평가손익"과 "나.통화선도·통화스왑 평가손익·환변동보험"의 ⑥손익조정금액란은 ②당기손익금해당액에서 ③회사손익금 계상액을 뺀 금액을 적고, 계산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.
 5. "다.환율조정계정손익"의 ②당기손익금해당액란에는 ⑩손익금해당액을 차익과 차손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.
 6. "다.환율조정계정손익"의 ③회사손익금계상액란에는 외화자산·부채의 평가손익금계상액을 차익과 차손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.
 7. ④차익조정란의 차익과소계상분은 익금산입, 차익과다계상분(△)은 익금불산입하고, ⑤차손조정란의 차손과다계상분은 손금불산입, 차손과소계상분(△)은 손금산입합니다.
 8. ⑦구분란에는 외화자산·부채명을 적습니다.
 9. ⑨전기이월액란에는 1999.1.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서식(갑)상의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.
 10. ⑩당기경과일수/잔존일수란은 해당 사업연도중 경과일수와 최종상환 또는 회수기일까지의 잔존일수로 합니다(해당 사업연도 중 경과일수도 잔존일수에 산입합니다).
 11.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 또는 중질지 80g/m²]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"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40호서식(갑)]"의 "가.화폐성 외화자산·부채 등 평가손익"과 "나.통화선도·통화스왑·환변동보험 평가손익("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인 경우 환위험회피 목적)"을 작성하기 위한 서식입니다.
2. 외화종류별로 평가손익을 계산하되, 적용환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용환율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.
3. ②외화종류란에는 국명과 화폐단위를 적습니다.
4. ⑤적용환율란에는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발생시에 적용한 환율을 적고,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해당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평가 시에 적용한 환율을 적습니다.
5. ⑥원화금액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장부상의 원화금액을 적고,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해당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법상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(장부상 원화금액에서 세무상 유보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)을 적습니다.
6. ⑧적용환율란에는 금융회사 등의 화폐성외화자산·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「외국환거래규정」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을, 금융회사의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및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화폐성외화자산·부채,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선도,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 환율을 적습니다.
7. ⑩평가손익란 중 합계금액은 "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40호서식(갑)]"의 "가.화폐성 외화자산·부채 등 평가손익"과 "나.통화선도·통화스왑·환변동보험 평가손익의 ②당기손익금해당액란에 옮겨 적습니다.